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7. 26, 정을호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 7. 2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 9. 26.)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1차 중소기업소위원회(2024. 11. 22.) 상정 · 심사 · 의결(원안가결)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 11. 28.) 상정 · 소위 심사보고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을호의원)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함)을 수탁·위탁기업 모두에게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수탁·위탁기업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로 인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구하기 어렵고, 요구하더라도 위탁기업이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과 유사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원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및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 변경함으로써,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3항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유인규)

개정안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위탁기업에만 부여하도록 하고, 그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역시 위탁기업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비밀유지계약’은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임.

비밀유지계약 체결 제도는 2021년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제도의 이행력 확보를 위하여 계약체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 계약체결을 회피하려는 동기는 위탁기업에게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문의 문언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수탁기업 및 위탁기업 모두에게 부여하면서¹⁾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1) 개정 당시 논의에 따르면, 양측의 의무이행을 근거로 하여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화된 명분과 동력을 부여하려던 것으로 보임 -제 385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 제1차 회의록(2021. 3. 4)

이에 따라 현행 조문에 따를 경우 상대방의 계약체결 거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수탁기업에 대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비밀유지계약 체결과 관련한 수탁기업의 자발적 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함. 이는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당초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²⁾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³⁾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수탁기업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법문에 명확히 규정하는 데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따라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를 수탁기업 및 위탁기업에서 위탁기업에만 부여(안 제21조의2제1항)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위탁기업에 한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안 제43조제3항제2호)으로써, 수탁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현행법과 유사한 취지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제도를 도입⁴⁾하였으나 계약체결 의무를 원사업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며,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도 원사업자에게 한정하고 있음⁵⁾. 현행법의 수탁·위탁거래는 하도급거래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 적용(참고자료 3)되므로, 제도 운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항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34호, 2021. 8. 17. 개정, 2021. 8. 17. 시행)은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원안(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547)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중 수급사업자를 삭제하고 원사업자에게만 계약체결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음.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박성민 위원)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위탁기업에만 부여하도록 하고, 그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역시 위탁기업에 한정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원안의결).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 중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을 “위탁기업은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으로 하고, “서면으로”를 “수탁기업과 서면으로”로 한다.

제43조제3항제2호 본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위탁기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경우 <u>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u> 1. ~ 4. (생략) ② (생략) 제43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u>아니한</u> <u>자</u> ④·⑤ (생략)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① ----- ----- ----- ----- <u>위탁기업은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u> ----- ----- ----- <u>수탁기업과 서면으로</u>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 ----- <u>아니한 위탁기업</u> ④·⑤ (현행과 같음)